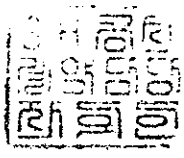


공사계약체결통보서

이 통보서를 함으로써 본 계약의 체결은 기쁘게 계약서 체결을 마친 상태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하여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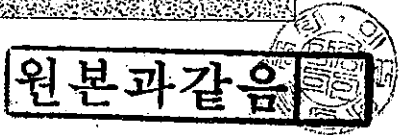
이 통보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합니다.

<발주처>		<계약자>	
에스에이치공사		<계약상대자>	
시설공사 계약관 기획경영본부장		상호:	경남(주)
과 인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남산(동 145-6)
사무관/서기관:		대표자:	김태환
담당:		사업자등록번호:	1108106502
	이전화 번호: (02) 3410-7127	전화 번호:	02-3410-0687
		팩스 번호:	02-3410-0659

계약번호	20130919464 - 03	관리번호	
공사명	부산광역시 남구 남산(동 145-6) 단차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공사	대표계약자	경남(주)
수요기관명	에스에이치공사		
현장	부산광역시 남구 남산동		
계약일자	2013.09.13		
금치계약금액	유망건설(주)의 전액 납입한 금액은 1,051,368,000 원	총공사무기금액	유망건설(주)의 전액 납입한 금액은 1,051,368,000 원
계약보증금	1,051,368,000 원		
계약보증서 전자제출여부	전자제출(유망건설(주) 납입)		
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금액의 5%에 한함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금액의 5%에 한함
착공일자	2013.09.25		
금치준공일자	2015.03.28	총치준공일자	2015.03.28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521일 (총 521일)		
지체상금율	1%	부가세율	10%
계약법규분	방화구획방	용기변동적용기준	지수조정준

이 통보서를 함으로써 본 계약의 체결은 기쁘게 계약서 체결을 마친 상태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하여 합니다.

이 통보서는 발주처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공사계약체결통보서를 수령하신 후 현장에 방문하여 공사계약체결통보서를 수령하시거나, 유망건설(주)의 전액 납입한 금액은 1,051,368,000 원인 점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의 5%에 한하여 전자제출한 계약보증금의 전액 납입을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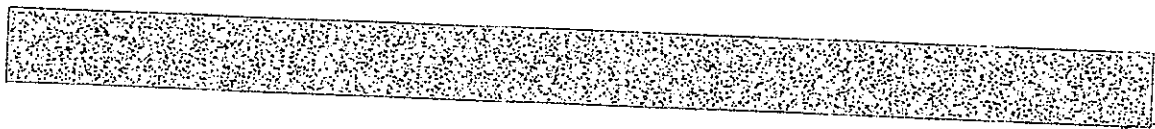


[채권 및 인지세 정보]

국민주택채권	0 원	지방채매입액	0 원
인지세과세대상여부	✓	인지세액	350,000 원

[첨부문서]

No.	문서명	파일명
1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결정) 1.pdf
2	내외사건서	서울100민사1부합제100008안제100피로정조동회고건물공사개입당부서결정내외사
3	다중이용시설의설계공시제일부수정안	다중이용시설의설계공시제안수정안 2.pdf
4	공시제안서, 공시제안서작성요령 및 입찰등록표양식	공시제안서, 공시제안서작성요령 및 입찰등록표양식.pdf
5	현장설명서	현장설명서 1.pdf
6	시방서	시방서 1.pdf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절차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절차규칙(대전정보정부서무규칙제1호_20150619제1) 1.pdf
8	전자계약서양식	전자계약서양식(20150919484) 1.pdf
9	시방서	시방서 전자계약(S4공사) 1.pdf



원본과 같음

공사변경계약체결통보서

<발주처> 에스에이치공사 시설공사 계약관 기획경영본부장 신병수 사무관/서기관 : 담당 : 임규범 (Tel: 02-3410-7127)	<계약자> <계약상대자> 상호 : 경남기업(주)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59(온천동) 대표자 : 장해남 사업자등록번호 : 1168105522 전화번호 : 02-2210-0565 팩스번호 : 02-2210-0559
---	---

계약번호	20130919454 - 01	관리번호	
공사명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		
신규장기구분	신규(단년도)		
대표계약자	경남기업(주)	수요기관명	에스에이치공사
계약일자	2013/09/17	변경계약일자	2014/04/08
계약보증서 전자제출여부	전자접수 및 직접수납(현금접수)		
하자보수보증금율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의함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의함
변경구분	계약내용변경		
변경사유			
지체상금율	0.1 %		

[기간변경 정보]

변경전 착공일자	2013/09/25	변경후 착공일자	2013/09/25
변경전 금차준공일자	2015/02/28	변경후 금차준공일자	2015/05/10
변경전 총준공일자	2015/02/28	변경후 총준공일자	2015/05/10
준공기한변경사유	선행공사 미완료로 인한 착공지연 및 터파기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계약금액변경 정보]

	총부기계약금액	금차계약금액
변경전 계약금액	68,380,368,000 원	68,380,368,000 원
1) 실제변경금액	0 원	0 원
2) 율가변경금액	0 원	0 원
변경후 계약금액	68,380,368,000 원	68,380,368,000 원

[채권 및 인지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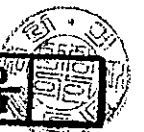
국민주택채권 추가매입액	0 원	지방채추가매입액	0 원
추가계약보증금	0 원		
인지세과세여부	N	추가인지세액	0 원

계약서에서 변경 약정하지 아니한 원계약서의 각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첨부문서]



No.	문서명	파일명
1	변경내역서	세곡2보글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_원가계산서 및 내-.xlsx
2	기관직인정보	사본 -전자직인(SH공사).jpg

원본과 같음 

공사변경계약체결통보서

〈발주처〉		〈계약자〉	
에스에이치공사 시설공사 계약관 기획경영본부장 한재천 사무관/서기관: 담당: 엄규범 (Tel: 02-3410-7127)		〈계약상대자〉 상호: 경남기업(주)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59(온천동) 대표자: 장해남 사업자등록번호: 1168105522 전화번호: 02-2210-0565 팩스번호: 02-2210-0559	
계약번호	20130919454 - 02	관리번호	
공사명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		
신규장기구분	신규(단년도)		
대표계약자	경남기업(주)	수요기관명	에스에이치공사
계약일자	2013/09/17	변경계약일자	2014/06/30
계약보증서 전자제출여부	전자접수 및 직접수납(현금접수)		
하자보수보증금율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변경구분	계약내용변경		
변경사유	세곡2초등학교 조리실 급식장비 설치에 따른 공기연장(전제공사 준공기한 변경없음)		
지체상금율	0.1 %		
[기간변경 정보]			
변경전 착공일자	2013/09/25	변경후 착공일자	2013/09/25
변경전 금차준공일자	2015/05/10	변경후 금차준공일자	2015/05/10
변경전 총준공일자	2015/05/10	변경후 총준공일자	2015/05/10
준공기한변경사유			
[계약금액변경 정보]			
	총부기계약금액		금차계약금액
변경전 계약금액	68,380,368,000 원		68,380,368,000 원
1) 설계변경금액	0 원		0 원
2) 물가변경금액	0 원		0 원
변경후 계약금액	68,380,368,000 원		68,380,368,000 원
[채권 및 인지세 정보]			
국민주택채권 추가매입액	0 원	지방채추가매입액	0 원
추가계약보증금	0 원		
인지세과세여부	N	추가인지세액	0 원

계약서에서 변경 약정하지 아니한 원계약서의 각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첨부문서]

원본과같음

No.	문서명	파일명
1	세곡2초등학교 수정공정표	세곡2초등학교 수정공정표(2014.06.24).xls
2	기관직인정보	사본-전자직인(SH공사).jpg

원본과 같음



공사변경계약체결통보서

<p><발주처> 에스에이치공사 시설공사 계약관 기획경영본부장 한재천 사무관/서기관 : 담당 : 엄규범 (Tel: 02-3410-7127)</p>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자> <계약상대자> 상호 : 경남기업(주)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59(온천동) 대표자 : 장해남 사업자등록번호 : 1168105522 전화번호 : 02-2210-0565 팩스번호 : 02-2210-0559</p>
---	--

계약번호	20130919454 - 03	관리번호	
공사명	세곡2보급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		
신규장기구분	신규(단년도)		
대표계약자	경남기업(주)	수요기관명	에스에이치공사
계약일자	2013/09/17	변경계약일자	2014/07/28
계약보증서 전자제출여부	전자접수 및 직접수납(현금접수)		
하자보수보증금율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의함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의함
변경구분	계약내용변경		
변경사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율	0.1 %		

[기간변경 정보]

변경전 착공일자	2013/09/25	변경후 착공일자	2013/09/25
변경전 금차준공일자	2015/05/10	변경후 금차준공일자	2015/05/10
변경전 총준공일자	2015/05/10	변경후 총준공일자	2015/05/10
준공기한변경사유			

[계약금액변경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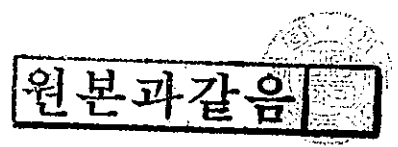
	총부기계약금액 95,061,449,974,329		금차계약금액
변경전 계약금액	68,380,368,000 원		68,380,368,000 원
1) 설계변경금액	1,307,534,474 원		1,307,534,474 원
2) 물가변경금액	0 원		0 원
변경후 계약금액	69,687,902,474 원		69,687,902,474 원

[채권 및 인지세 정보]

국민주택채권 추가매입액	0 원	지방채추가매입액	0 원
추가계약보증금	523,013,790 원		
인지세과세여부	N	추가인지세액	0 원

계약서에서 변경 약정하지 아니한 원계약서의 각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첨부문서]



No.	문서명	파일명
1	변경원가계산서	변경원가계산서 및 계약변경 개요서(세곡2초등학교).xlsx
2	기관직인정보	사본 -전자직인(SH공사).jpg

105061442974329

원본과 같음



공사변경계약체결통보서

<발주처>		<계약자>	
에스에이치공사		<계약상대자>	
시설공사 계약관 기획경영본부장		상 호 :	경남기업(주)
한재천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59(온천동)
사무관/서기관 :		대 표 자 :	장해남
담당 :	염규범 (Tel: 02-3410-7127)	사업자등록번호 :	1168105522
		전 화 번 호 :	02-2210-0565
		팩 스 번 호 :	02-2210-0559

계약번호	20130919454 - 04	관리번호	
공사명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		
신규장지구분	신규(단년도)		
대표계약자	경남기업(주)	수요기관명	에스에이치공사
계약일자	2013/09/17	변경계약일자	2014/08/29
계약보증서 전자제출여부	전자접수 및 직접수납(현금접수)		
하자보수보증금율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의함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의함
변경구분	계약내용변경		
변경사유			
지체상금율	0.1 %		

[기간변경 정보]

변경전 착공일자	2013/09/25	변경후 착공일자	2013/09/25
변경전 금차준공일자	2015/05/10	변경후 금차준공일자	2015/06/26
변경전 총준공일자	2015/05/10	변경후 총준공일자	2015/06/26
준공기한변경사유	표준공사기간 산정지침 개정 및 8단지 망글착 (발파) 심공사기간 반영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		

[계약금액변경 정보]

	총부기계약금액	금차계약금액
변경전 계약금액	69,687,902,474 원	69,687,902,474 원
1) 설계변경금액	0 원	0 원
2) 물가변경금액	0 원	0 원
변경후 계약금액	69,687,902,474 원	69,687,902,474 원

[채권 및 인지세 정보]

국민주택채권 추가매입액	0 원	지방채추가매입액	0 원
추가계약보증금	0 원		
인지세과세여부	N	추가인지세액	0 원

계약서에서 변경 약정하지 아니한 원계약서의 각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첨부문서]

원본과같음

No.	문서명	파일명
1	세곡2-6 수정공정표	세곡2지구6단지-공정표-(201408월).xls
2	세곡2-8 수정공정표	세곡2지구8단지-공정표-(201408월).xls
3	기관직인정보	사본-전자직인(SH공사).jpg

원본과 같음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

① 공 사 명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			
수급인	② 상호 및 대표자	경남기업(주)			
	③ 영업소 소재지	충남 아산시 온천동 242-10			
	④ 하도급 사유	공사관리의 원활함과 품질향상 및 정밀시공			
하수급인	⑤ 상호 및 대표자	성보건설(주) / 박기호			
	⑥ 업종 및 등록번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양천-82-08-13			
	⑦ 영업소 소재지	서울 양천구 신월4동 411-5			
	⑧ 수급인에게 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	2003년 08월 28일			
하도급내용	⑨ 공 종	창호 및 잡철물공사			
	⑩ 하도급 내용(율)	도급액(하도급 부분): 2,028,834,088 원 하도급(예정)금액: 1,699,400,000 원 하도급 율: 83.76%			
	⑪ 하도급 내용 (예정·변경)일	2014년 03월 25일	⑫ 하도급 공사기간	착공(예정): 2014년03월25일 준공(예정): 2015년05월10일	
	4대 보험료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반영 요율	반영금액	
	⑬ 고용보험	522,656,000	공급가*32%	6,899,296	■ 일괄 □ 개별
	⑭ 산재재해보상보험	-	-	-	■ 일괄 □ 개별
	⑮ 국민연금보험	522,656,000	직공비*계수 *구성비	12,265,414	□ 일괄 ■ 개별
	⑯ 국민건강보험	522,656,000	직공비*계수 *구성비	8,432,472	□ 일괄 ■ 개별
	⑰ 노인장기요양보험	522,656,000	직공비*계수 *구성비	552,327	□ 일괄 ■ 개별
	⑱ 퇴직공제부금	522,656,000	직공비*계수 *구성비	11,345,508	□ 일괄 ■ 개별

* ⑬~⑱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2014년 04월 11일

수급인 경남기업(주)

(서명)



SH공사 귀하

- 구비서류 :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1부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일본과같음

11. 지체상금을 :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1 %

당사자는 위 내용과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장, 시방서 ()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14년 03월 25일

“갑”

주 소 : 충남 아산시 온천동 242-10
상 호 : 경남기업(주)
성 명 : 장해남

“을”

주 소 : 서울 양천구 신월4동 411-5 성보건설(주)
상 호 : 성보건설 주식회사
성 명 : 박기로

원본과 같음

이 문서는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된 계약서입니다

하도급 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	
	도급 계약금액		68,380,368,000원	
	계약기간		2013년 09월 17일 ~ 2015년 05월 10일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창호잡철물공사	
	하도급 계약금액		1,699,400,000원	
	계약기간		2014년 03월 25일 ~ 2015년 05월 10일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경남기업(주) 대표이사 장 해 남	
		주소	충남 아산시 온천동 242-10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성보건설(주) 대표이사 박 기 로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4동 411-5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절 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지급하기로 합니다.

◆ 하수급인 예금계좌

예 금 주	은행명	계 좌 번 호
성보건설(주)	기업은행	013-027554-01-038

-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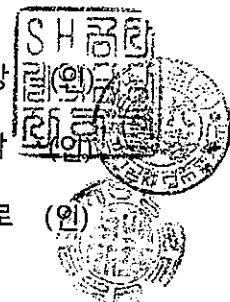
3.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2014. 05. 26
2014년 04월 일

발 주 자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수 급 인 : 경남기업(주) 대표이사 장 해 남

하수급인 : 성보건설(주) 대표이사 박 기 로 (인)



문서번호	건축3팀-5173
보존기간	1년
결재일자	2014.12.09
공개여부	공개

★ ◎

팀 원	건축3팀장	공사2처장		
채민창	최수근	진선호	12/09	
협 조	팀 원	이동구	건축발주팀장	조진래
	토목3팀장	김영배	기계2팀장	이원동
	조경2팀장	장택상		

세곡2초등학교 건설공사 준공정산 보고

103941472696259

서울특별시 SH공사
(공사2처 건축3팀)

세곡2초등학교 건설공사 준공정산 보고

세곡2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 중 세곡2초등학교 건설공사에 대한 공종별 직접공사비 정산을 완료하고 간접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준공정산코자 함.

1.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 관련문서

가. 토목3팀-6007호(2014.12.01.) 『세곡2지구 초등학교 건설공사 준공정산내역 통보』
나. 기계2팀-2770호(2014.12.02.) 『세곡2초등학교 기계분야 준공정산 현황 통보』
다. 조경2팀-3255호(2014.11.28.) 『준공정산금액 통보[세곡2지구 초등학교(조경)]』

3. 계약현황

가. 공 사 명 : 세곡2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 중
세곡2초등학교 건설공사
나. 계 약 자 : 경남기업(주) 대표이사 장해남
다. 계 약 일 : 2013.09.17
라. 준 공 일 : 2014.07.28
마. 계약금액 : 8,920,959,029원 ¹⁰³⁹⁴¹⁴⁷²⁶⁹⁶²⁵⁹

4. 직접공사비 정산현황

가. 직접공사비 증감현황(총괄)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건 축	4,865,874,072	4,908,697,555	증 42,823,483	
토 목	212,609,384	212,609,384	-	
기 계	1,334,440,506	1,334,440,506	-	
기계소방	120,752,759	120,752,759	-	
조 경	338,772,266	342,702,685	증 3,930,419	
합 계	6,872,448,987	6,919,202,889	증 46,753,902	

나. 건축공사 직접공사비 정산내용

공정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금속공사	363,151,400	385,035,810	증 21,884,410	-시청각실 및 유치원 창보호대 설치 -4층 상상마루구간 스텐핸드레일 추가 -계단실2 벽부형 핸드레일 설치 -정문 및 후문 트랜치 커버 변경 -욕상 에어컨 PD커버 설치 -주방트랜치 추가설치 -체육관 스피커보호대 설치 -피트 점검구(바닥형) 설치
창호공사	301,349,747	305,388,023	증 4,038,276	-식당 여닫이용 방충망 설치
유리공사	112,499,325	114,672,489	증 2,173,164	-양치대 위 거울 설치
부대공사	162,982,205	177,709,838	증 14,727,633	-싱크대 4개소 추가 설치 -특수교실 싱크대 급배수 배관 설치 -현수막걸이대 및 경사로 추가설치 -출입문 및 메쉬웬스 추가설치
합계	939,982,677	982,806,160	증 42,823,483	

5. 간접공사비 정산현황

비목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간접노무비	215,537,253	217,044,024	증 1,506,771	직접비 증가에 따른 변경
산재보험료	89,426,603	90,051,096	증 624,493	직접비 증가에 따른 변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8,986,874	136,985,303	감 2,001,571	사용내역서 확인
기타경비	290,679,201	292,661,492	증 1,982,291	직접비 증가에 따른 변경
퇴직공제부금비	48,014,872	47,975,919	감 38,953	납부확인서 확인
고용보험료	29,910,862	30,120,151	증 209,289	직접비 증가에 따른 변경
국민건강보험료	44,438,304	1,877,521	감 42,560,783	납부확인서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10,707	122,875	감 2,787,832	납부확인서 확인
국민연금보험료	65,089,047	2,200,078	감 62,888,969	납부확인서 확인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4,130,530	-	감 4,160,530	미대상(e바로시스템 직불)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520,438	1,531,136	증 10,698	직접비 증가에 따른 변경
합계	930,674,691	820,569,595	감 110,105,096	

6. 준공정산 총괄표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건 축	6,346,308,246	6,276,305,750	감 70,002,496	일반관리비, 부가세, 시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포함
토 목	269,784,550	268,250,519	감 1,534,031	
기 계	1,711,319,016	1,673,098,010	감 38,221,006	
기계소방	156,638,342	153,212,671	감 3,425,671	
조 경	436,908,875	431,202,152	감 5,706,723	
합 계	8,920,959,029	8,802,069,102	감 118,889,927	

7. 행정사항

가. 정산금액을 상기와 같이 확정하고 해당금액을 계약팀에 통보하여 지급유보된 건설공사 잔여계약금액을 집행토록 함.

- 붙임 1. 세곡2지구 초등학교 건설공사 준공정산내역 통보
 2. 세곡2초등학교 기계분야 준공정산 현황 통보
 3. 준공정산금액 통보[세곡2지구초등학교(조경)]
 4. 준공정산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세곡2초)
 5. 교육청요청사항 관련공문(세곡2초). 끝.

103941472696259

합 의 서



1. 권유번호	제 호	2. 계약번호	20130919454-04호
3. 공사(용역)명	세곡2보급자리 주택지구 초등학교 건설공사		

당사는 SH공사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중에 있는 상기 계약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합의하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계약대상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합 의 내 용

계약금액 변경
 당초계약금액 : 일금팔십구억이천구십오만구천이십구원정 (₩8,920,959,029)
 (증 , **감**) : 일금일억일천팔백팔십팔만구천구백이십칠원정 (-₩118,889,927)
 준공정산금액 : 일금팔십팔억이백육만구천일백이원정 (₩8,802,069,102)

2014년 11월 일

계 자	계약상대자	주 소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59(온천동)			
		상 호	경남기업(주)	전화번호	02-2210-0565	
		대표자	장해남 	법인등록번호	110111-0008262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103941472695846			
		상 호		전화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발 주 처	에스에이치공사 					

하자보수보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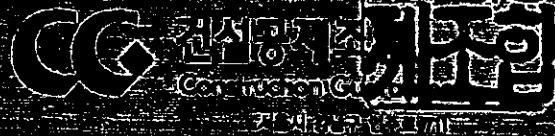
보증서번호 제 201400183740 호

보증금액	일금 사천구백이십삼만오천삼백원 (₩49,235,300)
계약금액	일금 일십육억사천일백일십칠만육천육십원 (₩1,641,176,667)
계약명	세곡2보급차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중 세곡2초등학교 건설공사(건축(정근호크리드공사))
계약일	2013년 09월 17일
계약이행기일	2014년 07월 23일
하자담보이행기간	2014년 12월 24일 부터 2019년 12월 23일
보증기간	2014년 12월 24일 부터 2019년 12월 23일
계약자	상호 김부겸 대표자 장해남
특기사항	1. 이 보증서는 2014년 09월 25일 발급된 보증서번호 제201400183740호 보증서 내용중 하자담보이행기간개시일(2014.12.24)으로 하자담보이행기간종료일(2019.12.23)으로 보증기간개시일을(2014.12.24)으로 보증기간종료일을(2019.12.23)으로 변경한 것임. 변경보증서이며, 이 변경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당초 원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위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비용과 편집 약관이 따라 집행할수있도록 하여 우리측만이 이를 보증합니다. 우리 측입은 편집 약관이 따라 보증금입을 부담하므로 약관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02월 10일

대스에이치공사 귀하



주요점점 : 동대문지점, 02-349-2123-6
서울 동대문구 동삼로 10길보자빌딩 11층
강남본점 : 02-349-2133
고객상담센터 : 1588-1242

이사장 정안태
대리인 동대문지점장 이인영
이 보증서는 대리인의 직인이 있습니다.



이 보증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것으로서 서면보증서의 법적으로는 동일함을 효력이 있으며, 건실명사(www.cgbest.co.kr)의 보증서인quiry시스템과 매뉴얼서 참조하여 보증금입을 받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보수 보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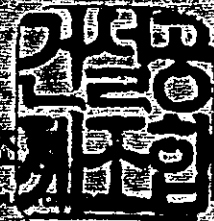
보증서번호 제 201400183741 호

보증금액	일금 육백육십삼만팔천일백칠십칠원 (₩6,638,177)
계약금액	일금 이억이천일백이십칠만이천오백사십원 (₩221,272,540)
계약명	세곡2보급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중 세곡2초등학교 건설공사(건축(방수공사,지붕공사))
계약일	2013년 09월 17일
계약이행기일	2014년 07월 28일
하자담보책임기간	2014년 12월 24일 부터 2017년 12월 23일
보증기간	2014년 12월 24일 부터 2017년 12월 23일
계약자	상호: 경남기업(주) 대표자: 장해남
특기사항	1. 이 보증서는 2014년 12월 24일 발급한 보증서번호 제201400183741호 보증서 내용중 하자담보책임기간개시일(2014.12.24)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종료일(2017.12.23)으로 보증기간개시일을(2014.12.24)으로 보증기간종료일을(2017.12.23)으로 일부 변경한 개정보증서이며 이 변경내용을 제외한 부분을 원보증서와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별첨 약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우리조합이 이를 보증합니다. 우리 조합은 별첨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약관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02월 10일

에스케이건설공사 귀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1

발급지점: 동대문지점 02-3449-2138
 서울 동대문구 왕신로 10 교보재타빌딩 11층
 강북보상센터 02-3449-2138
 고객센터 1588-1444

이사장 정완태
 대리인 동대문지점장 이일양
 이 보증서는 대리인의 직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이 보증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것으로서 서면보증서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의 보증서발급사실조회 메뉴에서 진위여부 및 보증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보수 보증서

보증서번호 제 201400183742 호

보증금액	일금 이천일백이십만팔백삼원 (₩21,200,803)
계약금액	일금 칠억육백육십구만삼천사백이십오원 (₩706,693,425)
계약명	세곡2보급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중 세곡2초등학교 건설공사(토목공사, 조경공사)
계약일	2013년 09월 17일
계약이행기일	2014년 07월 28일
하자담보책임기간	2014년 12월 23일 부터 2016년 12월 23일
보증기간	2014년 12월 24일 부터 2016년 12월 23일
계약자 상호	경남기업 (주) 대표자 장해남
특기사항	1. 이 보증서는 2014년 12월 24일 발급한 보증서번호 제201400183742호 보증서 내용중 하자담보책임기간개시일(2014. 12. 24)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종료일(2016. 12. 23)으로 보증기간개시일을(2014. 12. 24)으로 보증기간종료일을(2016. 12. 23)으로 일부 변경한 변경보증서이며, 이 변경내용을 제외하되 본문의 다른 내용과 보증서의 효력이 동일합니다.

본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별첨약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수립조항이 이를 보증합니다. 우리 조항은 별첨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약관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02월 10일

에스에이치공사 귀하



발급지점: 동대문지점 02-3449-2123-6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0 교보재단빌딩 11층
 강북보상센터 02-3449-2138
 고객센터 1588-1444

이사장 정완대
 대리인 동대문지점장 이일양
 이 보증서는 대리인의 직인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이 보증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것으로서, 서면보증서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www.cbbsf.co.kr)의 보증서발급사실조회 메뉴에서 진위여부 및 보증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보수 보증서

보증서번호 제 201400183743 호

보증금액	일금 삼천팔백구십사만삼천이백오십육원 (₩38,943,256)
계약금액	일금 일십이억구천팔백일십만팔천오백일원 (₩1,298,108,501)
계약명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중 세곡2초등학교 건설공사(건축(금속공사, 석공사, 조적공사))
계약일	2013년 09월 17일
계약이행기일	2014년 07월 28일
하자담보책임기간	2014년 12월 24일 부터 2016년 12월 23일
보증기간	2014년 12월 24일 부터 2016년 12월 23일
계약자	상호 경남기업(주) 대표자 장해남
특기사항	1. 이 보증서는 2014년 12월 24일 발급한 보증서번호 제201400183743호 보증서 내용중 하자담보책임기간개시일[2014.12.24]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종료일 [2016.12.23]으로 보증기간개시일을 [2014.12.24]으로 보증기간종료일을 [2016.12.23]으로 일부 변경한 수정보증서이며, 이 변경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당초 원보증서의 기재사항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위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별첨 약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우리조합이 이를 보증합니다. 우리 조합은 별첨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약관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02월 10일

에스에이치공사 귀하



건설공제조합
Construction Guarantee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7길

발급지점 : 동대문지점 02-3449-2123-6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0 교보재단빌딩 11층
강북보상센터 : 02-3449-2138
고객상담실 : 1588-1444

이사장 정완대

대리인 동대문지점장 이일양

이 보증서는 대리인의 직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이 보증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것으로서 서면보증서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의 보증서발급사실조회 메뉴에서 진위여부 및 보증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보수 보증서

보증서번호 제 201400183744 호

보증금액	일금 오천육백삼만팔천칠백이십원 (₩56,038,720)
계약금액	일금 일십팔억육천칠백구십오만칠천삼백오십팔원 (₩1,867,957,358)
계약명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중 세곡2초등학교 건설공사(기계(기계설비공사, 기계소방공사))
계약일	2013년 09월 17일
계약이행기일	2014년 07월 25일
하자담보책임기간	2014년 12월 23일 부터 2016년 12월 23일
보증기간	2014년 12월 24일 부터 2016년 12월 23일
계약자 상호	경남기업 대표자 장해남
특기사항	1. 이 보증서는 2014년 09월 25일 발급된 보증서번호 제201400183744호 보증서 내용중 하자담보책임기간개시일(2014.12.24)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종료일(2016.12.23)으로 보증기간개시일을(2014.12.24)으로 보증기간종료일을(2016.12.23)으로 변경된 보증서이며, 이 변경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당초 원보증서의 기재내용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위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별첨 약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우리조합이 이를 보증합니다. 우리 조합은 별첨 약관에 따라 보증 책임을 부담하므로 약관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02월 10일

에스에이치공사 귀하



발급지점: 동대문지점 02-3449-2123-6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0 교보재단빌딩 11층
 강북보심센터 02-3449-2138
 고객상담실 1588-1444

이사장 정완대
 대리인 동대문지점장 이일양
 이 보증서는 대리인의 직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이 보증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것으로서, 서면보증서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의 보증서발급사실조회 메뉴에서 진위여부 및 보증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보증서

보증서번호 제 201400183745 호

보증금액	일금 구천오백오십칠만이천오백일십칠원 (₩95,572,517)
계약금액	일금 삼십일억팔천오백칠십오만오백삼십팔원 (₩3,185,750,538)
계약명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중 세곡2초등학교 건설공사(건축(기타공사,도장공사,미장공사,수장공사,유리공사,창호공사,타일공사))
계약일	2013년 09월 17일
계약이행기일	2014년 07월 28일
하자담보책임기간	2014년 12월 24일 부터 2015년 12월 23일
보증기간	2014년 12월 24일 부터 2015년 12월 23일
계약자	상호 영합기업 대표자 장해남
특기사항	1. 이 보증서는 2014년 09월 25일 발급한 보증서번호 제201400183745호 보증서 내용중 하자담보책임기간개시일 [2014.12.24]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종료일 [2015.12.23]으로 보증기간개시일 [2014.12.24]으로 보증기간종료일을 [2015.12.23]으로 변경한 수정보증서이며, 이 변경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당초 원보증서의 기재내용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위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별첨 약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우리조합이 이를 보증하며, 우리 조합은 별첨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약관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02월 10일

에스에이치공사 귀하



건설공제조합
Construction Guarantee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61

발급지점: 동대문지점, 02-3449-2123-6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0 교보재단빌딩 11층
강북본사센터: 02-3449-2138
고객상담실: 1588-1444

이사장 정완대
대리인 동대문지점장 이일양

이 보증서는 대리인의 직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이 보증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것으로서 서면보증서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의 보증서발급사실조회 메뉴에서 진위여부 및 보증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5 파 산 부

결 정

사 건 2015회합100070 회생
신 청 인 겸 채 무 자 경남기업 주식회사
서울 동대문구 황물로 168 (답십리동)
대표이사 장해남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올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윤홍근, 김선경, 조정익, 황인용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이성희(1950. 9. 2.생,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55 (금곡동, 두산위브) 103동 801호)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관리인 이성희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5. 4. 7.부터 2015. 4. 27.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15. 4. 28.부터 2015. 5. 13.까지로 한다.
103941472607690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15. 5. 14.부터 2015. 6. 9.까지로 한다.
7.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15. 7. 15. 15:00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제209호)으로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목적

채무자는 1951. 8.경 설립되어 토목, 건축, 포장, 상·하수도설비, 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과 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 및 이와 관련되는 일체의 부대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자본과 주주

채무자의 자본금은 179,016백만원(35,803,128주)으로,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식수	금액(백만원)	지분율
성완중	3,401,336	17,007	9.5%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	3,144,986	15,725	8.8%
채권단	20,000,000	100,000	55.9%
서산장학재단	470,398	2,352	1.3%
우리사주조합	34,169	171	0.1%
기타	8,752,239	43,761	24.4%
계	35,803,128	179,016	100.0%

다. 자산·부채 현황 및 매출액·손익 현황

채무자의 2014년말 기준 장부상 자산 총계는 약 1조 4,219억 원, 부채는 약 1조 3,869억 원이다. 한편, 채무자의 최근 5개년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과목	(단위 : 백만원)				
	2014. 9.	2013	2012	2011	2010
I.매출액	821,595	749,206	1,134,528	1,415,696	1,596,252
II.매출원가	823,023	981,774	1,047,924	1,337,736	1,474,528
III.매출총이익	-4,428	-232,568	86,604	77,960	121,724
1.판매비와일만관리비	25,972	103,941	42,602	33,362	44,633
IV.영업이익	-30,400	-287,819	44,003	48,780	68,926
1.금융수익	114,999	10,703	46,313	33,263	16,061
2.금융비용	50,966	64,867	47,723	38,329	45,289
3.기타영업외수익	5,922	6,911	23,082	12,992	10,691
4.기타영업외비용	23,513	50,111	96,699	8,810	18,856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041	-385,184	-31,025	32,528	21,071
VI.법인세	-12,560	45,624	7,860	-13,520	300
VII.당기순이익	3,481	-339,560	-23,164	19,008	21,370

라. 재정적 파탄원인

채무자는 건설업황의 지속적인 저조세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두 번에 걸쳐 기

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워크아웃 진행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신규수주는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이러한 매출실적 감소 및 진행 중인 공사현장 관련 노무비와 경비의 직불처리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는 운영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2014. 2.부터 진행된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무자가 당초 계획하였던 주요 자산의 매각 작업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아 채무자의 유동성 위기가 계속되었고, 2014년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으로 인하여 상장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등 채무자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고, 달리 법 제42조 각 호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법 제50조 제1항, 제7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성희(1950. 9. 2.생)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03941472607690

2015. 4. 7. 16:30

재판장	판사	이재권
	판사	심현지

판사

박현배



103941472607690

정본입니다.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박찬근



103941472607690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보건설주식회사

우:158 - 083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회대로30(신월동) TEL : 02) 2608 - 5322 ~ 4 FAX : 02) 2608 - 5325

문서번호 : 성보2015-09-01

수 신 : SH공사

참 조 :

주 소 :

제 목 : 경남기업 정산 하도급 직불 관련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세곡6,8단지현장 창호및잡철물공사와 관련하여 작업을 하였는데 2015년 2월 이후(3월부터) 기성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임문제 는 물론 많은업체들의 고충이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고있습니다.하여 SH공사에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빠른결재를 바랍니다.

2015 년 09 월 18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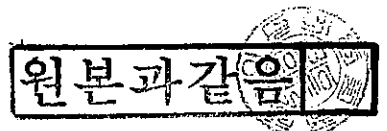
상 호 : 성보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 기 로

주 소 :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30 (신월동)



SH공사 귀하



정산합의서

공사명 : 세곡2지구 6,8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공종명 : 잠철물공사

■ SH공사와 경남기업의 정산에 따른 하도급 정산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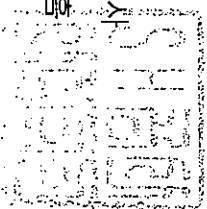
최초계약금액	정산금액	전회기성	금회기성	누계기성	비고
1,189,400,000	243,760,000	139,810,000	103,950,000	243,760,000	세곡2초 별도

상기에 정한 준공정산합의 내용에는 기성대금 지급 관련하여 설계변경, 물가변동금액 및 공기연장과 관련한 체반 간점공사비등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여하한 사유로도 상호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상기공사로 인한 자재비,노무비,장비비,식대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 또는 소송 발생시 하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

2015년 9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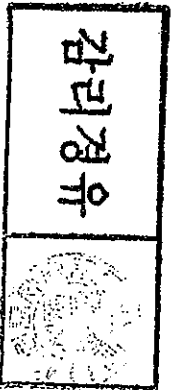
발주처 상 호 : SH공사

대 표 : 변창흠



하수급인 상

대 표 : 박기훈



보증시공사 상 호 : 한신공영역

현장대리인 : 배명진



원본과같음

★ ◎

본부장 방침 제32호

문서번호	건축공사부-406
보존기간	10년
결재일자	2016.01.22
공개여부	비공개(7)
일상감사	대상

부원	파트장	건축공사부장	건설사업처장	건설안전사업부장
박지영	배양수	한일현	김영수	전결 01/22
협조	기계공사부장 김혁재 토목조경공사부장 이상태			

일상	No. 39	감사	의견
감사	2016/01/22	김광석	의견없음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

**세곡2지구 6,8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준공정산(총괄) 보고**

103941472704432

서울특별시 SH공사
(건설안전사업본부)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
준공정산(총괄) 보고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의 직접
 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준공정산코자 함

1. 관련근거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 정산 등
- 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다. 단지조경팀-2919(2015.11.17) 「세곡2지구 6,8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준공정산보고(조경)」
- 라. 기계공사팀-2939(2015.11.23) 「기계,소방설비공사 세곡2지구 6,8단지 계약내역 정산보고」
- 마. 토목조경공사부-54(2016.01.12) 「세곡2지구 6,8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토목준공정산 검토 보고」
- 바. 세곡한신 제713-97(2016.01.15) 「준공정산 요청」

2. 계약현황

- 가. 공 사 명 :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 6, 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
- 나. 계 약 자 : 한신공영(주)
- 다. 계 약 일 : 2013. 09. 17
- 라. 공사기간 : 2013. 09. 25 ~ 2015. 07. 26
- 마. 계약금액 : 74,756,935,029원 103941472704432
- 바. 계약금액 현황

(단위:원)

구 분	6 단 지	8 단 지	초등학교	계	비 고
건 축	28,313,606,000	19,188,325,000	6,346,308,246	53,848,239,246	
토 목	1,001,549,000	5,607,277,000	269,784,550	6,878,610,550	
기 계	4,715,996,000	3,216,804,000	1,711,319,016	9,644,119,016	
소 방	634,204,000	470,632,000	156,638,342	1,261,474,342	
조 경	1,671,503,000	1,016,080,000	436,908,875	3,124,491,875	
소 계	36,336,858,000	29,499,118,000	8,920,959,029	74,756,935,029	

3. 직접공사비(아파트) 정산현황

가. 직접공사비 정산 내용

(단위:원)

구 분	계약금액(직접비) (a)	정산금액 (b)	변경금액 (c)=(a)+(b)	비 고
건 축	36,892,793,991	증) 280,850,803	37,173,644,794	
토 목	5,082,203,516	증) 10,116,815	5,092,320,331	
기 계	6,213,212,103	감) 36,509,571	6,176,702,532	
소 방	853,568,980	감) 808,473	852,760,507	
조 경	2,148,754,220	증) 29,648,500	2,178,402,720	
소 계	51,190,532,810	증) 283,298,074	51,473,830,884	

나. 건축공사 직접공사비 정산내용

(단위:원)

구 분	증 감	정 산 사 유
준공후 평가 지시사항	32,645,763	- 준공평가 지시사항 반영(터닝도어 도어스톱, 트랜치 커버변경, 석재뿔칠 추가, 점검용사다리 설치, 분리수거장 바닥조면처리, 펌프실 헨스설치)
내역누락분 반영	61,939,636	- 집수정커버, 상가 칸막이벽 설치, 피로티바닥 화강석, 경로당 받침문
지급자재 사급전환	5,844,007	- 자전거거치대 사급전환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	95,377,644	- 층간 방화물딩 시공(설계자에 구상구 청구 및 제재조치 예정)
마감.공법변경	감) 30,403,364	- 화장실벽화향내향호 내부코킹 삭제, 폴리싱타일 공법변경, 비닐페인트 삭제(무늬코트로 변경) 등
민원처리(입주민 외)	98,326,395	- 입주자, 관리사무소 요구사항 및 기타 민원처리(경비실 문주 설치, 심정설치, 가림막설치, 과속방지턱, 반사경 추가설치 외)
견본주택 시공항목 반영	12,500,722	- 대피공간 방화문 도어체크 설치
경남기업 정산분내역반영	4,620,000	- 경남기업 지급자재(벽돌,블록) 파렛트 분실액 정산감액
소 계	280,850,803	

4.간접비(아파트) 정산현황

가. 간접공사비 정산현황

(단위: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정산사유
간접노무비	1,679,728,791	1,688,858,843	증) 9,130,052	직접비 정산에 따른 변경
산재보험료	683,751,926	687,535,937	증) 3,784,011	직접비 정산에 따른 변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70,586,555	1,070,586,555	증) -	사용내역서 확인
기타경비	2,170,396,671	2,182,408,050	증) 12,011,379	직접비 정산에 따른 변경
퇴직공제부금비	377,939,689	317,299,198	감) 60,640,491	납부확인서 확인
고용보험료	229,149,301	223,449,347	감) 5,699,954	직접비 정산에 따른 변경
국민건강보험료	352,682,914	27,305,499	감) 325,377,415	납부확인서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3,100,713	1,784,275	감) 21,316,438	납부확인서 확인
국민연금보험료	516,576,752	35,257,462	감) 481,319,290	납부확인서 확인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	29,149,524	-	감) 29,149,524	납부확인서 확인
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29,690,494	-	감) 29,690,494	납부확인서 확인
공사이행보증수수료	31,191,602	30,906,065	감) 285,537	직접비 정산에 따른 변경
소 계	7,193,944,932	6,265,391,231	감) 928,553,701	

나. 월가계산서내 비목 정산내용

(단위: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정산사유
일반관리비	2,023,065,514	2,000,725,883	감) 22,339,631	직접비 정산에 따른 변경
정기안전점검비	74,636,665	71,452,641	감) 3,184,024	사용내역서 확인
매입세	2,417,440,600	1039427470,279,015	증) 54,838,415	직·간접비 정산에 따른 변경
부가가치세	1,198,290,861	1,184,128,205	감) 14,162,656	직·간접비 정산에 따른 변경
시운전비	56,999,000	28,412,170	감) 28,586,830	사용량 정산
어린이놀이시설설치검사비	1,455,000	1,576,300	증) 121,300	사용내역서 확인
시설물안내서제작		45,560,064	증) 45,560,064	실 제작비 적용
물가연동제 공급가	1,162,748,000	1,133,309,726	감) 29,438,274	직·간접비 정산에 따른 변경
물가연동제 부가세	25,988,000	23,720,574	감) 2,267,426	직·간접비 정산에 따른 변경
폐기물처리비		449,353,310	감) 449,353,310	폐기물처리비 설계수량 초과분 정산
자체상금		432,683,000	감) 432,683,000	공시준공 지연에 따른 자체상금 부과
소 계	6,960,623,640	6,079,128,268	감) 881,495,372	

5. 세곡2초 준공정산 현황

가. 준공정산 계약반영

(단위:원)

구 분	계약금액 (a)	정산금액 (b)	변경금액 (c)=(a)+(b)	비 고
건 축	6,346,308,246	감) 70,002,496	6,276,305,750	
토 목	269,784,550	감) 1,534,031	268,250,519	
기 계	1,711,319,016	감) 38,221,006	1,673,098,010	
소 방	156,638,342	감) 3,425,671	153,212,671	
조 경	436,908,875	감) 5,706,723	431,202,152	
소 계	8,920,959,029	감) 118,889,927	8,802,069,102	

※ 준공정산방침 : 건축3팀-5173(2014.12.09.) 「세곡2초등학교 건설공사 준공정산 보고」

6. 준공정산 총괄표

(단위: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아 파 트	건 축	47,501,931,000	46,282,207,000 감) 1,219,724,000
	토 목	6,608,826,000	6,532,592,000 감) 76,234,000
	기 계	7,932,800,000	7,742,570,000 감) 190,230,000
	소 방	1,104,836,000	1,078,080,000 감) 26,756,000
	조 경	2,687,583,000	2,673,776,000 감) 13,807,000
	소 계	65,835,976,000	64,309,225,000 감) 1,526,751,000
초 등 학 교	건 축	6,346,308,246	6,276,305,750 감) 70,002,496
	토 목	269,784,550	268,250,519 감) 1,534,031
	기 계	1,711,319,016	1,673,098,010 감) 38,221,006
	소 방	156,638,342	153,212,671 감) 3,425,671
	조 경	436,908,875	431,202,152 감) 5,706,723
	소 계	8,920,959,029	8,802,069,102 감) 118,889,927
총 계	건 축	53,848,239,246	52,558,512,750 감) 1,289,726,496
	토 목	6,878,610,550	6,800,842,519 감) 77,768,031
	기 계	9,644,119,016	9,415,668,010 감) 228,451,006
	소 방	1,261,474,342	1,231,292,671 감) 30,181,671
	조 경	3,124,491,875	3,104,978,152 감) 19,513,723
	소 계	74,756,935,029	73,111,294,102 감) 1,645,640,927

7. 행정사항

가. 정산금액을 상기와 같이 확정, 해당금액을 계약팀에 통보하여 유보된 준공기성 금액 집행

- 붙임
1. 정산내역서
 2. 정산설계변경
 3. 세곡2지구 6,8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토목 준공정산 결과 송부
 4. 세곡2지구6,8단지 계약내역 정산보고(기계소방)
 5. 준공정산금액 통보[세곡2지구6,8단지(조경)]
 6. 세곡2초등학교 건설공사 준공정산 보고
 7. 세곡2지구 6,8단지 아파트의 준공청소등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8.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건축). 끝.

공정한 분쟁조정, 자율적인 경쟁질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수신자 에스에이치공사(대표이사 변창흠)
(경유)

제목 조정신청 접수사실 통지 및 자료제출 요구(하도2016-0280)

1. 우리 협의회는 에스에이치공사(대표이사 변창흠)가 귀사와의 분쟁과 관련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서를 2016. 4. 7. 접수하였습니다.

2. 이 분쟁사건은 우리 조정원 하도급팀 류성호 조사관(02-2056-0045, eagleye@kofair.or.kr)이 담당할 예정이며, 붙임 「분쟁조정 신청사건 처리안내」와 같이 처리되오니 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분쟁사건의 사실확인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2016. 4. 21.(목)까지

나. 제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 류성호 조사관 앞

다. 제출자료 - 각 3부(*1부는 상대방에게 전달 예정)

- 1) 답변서(*아래 내용과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 가) 분쟁의 배경(*계약사항 및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기술할 것)
 - 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
- 2) 일반현황표(*붙임 양식에 의거하여 2013년 기준으로 작성)
- 3) 2013년 기준 재무제표증명원 및 2013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5) 이 사건 건설위탁 관련 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 변경내역, 도급대금 수령 내역 및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입금확인증 등 지급증빙 포함)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최초/변경/정산계약서 및 부속서류들을 함께 제출할 것)
- 6) 기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 * 내용은 반드시 시간순(과거→현재)으로 작성할 것
 - * 입증 근거·자료는 사본하여 각장마다 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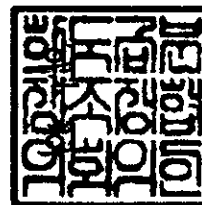
4. 만일, 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사가 우리 협의회의 조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하도급법 제24조의4 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조정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송부하게 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여 범위반 여부와 위반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5. 참고로, 첨부하신 자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공개될 수 있으니 비공개를 원하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라며(해당자료에 별도 표기 요망), 이 사건 조정에 대한 진행상황은 우리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상의 “민원신청 → 분쟁조정사건조회(사건번호: 하도2016-0280, 비밀번호: 1460028278743)” 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귀사에서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당사자 상대방의 기업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1. 일반현황표(별첨)
 2. 분쟁조정 신청사건 처리안내 1부(별첨)
 3. 신청서 사본 1부(별첨)
 4. 계약변경내역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양식)(별첨). 끝.

한 국 공 정 거 래 조 정
 하 도 급 분 쟁 조 정 협 의



조사관 류성호 전결 04/08
 팀장 김건호

협조자

시행 건설하도급팀-1033 (2016.04.08.) 접수 0

우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회관 9층 /

전화 02-2056-0045 전송 02-2056-0049 / eagleye@kofair.or.kr / 공개

하도급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상 호	성보건설(주)	대표자	박 기 로
	주 소	(07929) 서울시 양천구 국회대로30(신월동)		
	전 화 번 호	02-2608-5322	H.P	011-265-0331
	F A X	02-2608-5325	E-MAIL	fsdoor@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	113-81-21372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10111-0333809
피신청인	상 호	에스에이치공사	대표자	변 창 흠
	주 소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621		
	전 화 번 호	02-3410-8933/건축공사부	FAX	02-3410-8995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의 이유		(별지 첨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붙임 : 1. 일반현황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제무제표확인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 건설업 등록 수첩 및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 확인서 사본 1부.
 5. 위임장 1부.
 6. 입증서류(하도급 계약서 외) 각 3부.

* 위 신청서 3부 및 붙임자료를 제출합니다.

2016. 04. 5 .

신청인 성보건설(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귀하

주1) 상호, 주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호 및 주소를 말함

주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함

* 신청 취지 이유

당사는, 에스에이치공사에서 발주한 “세곡2보급자리주택지구 6, 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를 경남기업(주)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창호 및 잡철물공사를 시공한 업체입니다.

총 계약 금액은 1,699,400,000원이었으나, 2014년 10월 24일자로 1,761,750,000원으로 계약 변경되었습니다.

상기 공사 중 세곡2 초등학교의 순공사비 506,077,306원에서 기 수금한 480,773,440원을 제외한 미수금 25,303,866원과, 경남기업(주)가 부도 후 보전해주기로 하여 추가로 시공한 21,179,000원 총 46,482,866원을 발주처인 에스에이치공사에 수차례에 걸쳐 직불 요청하였으나 에스에이치공사는 당사의 미지급 금액이 확인이 되지만 이는 경남기업(주)와의 관계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에스에이치공사는, 경남기업(주)의 부도로 인한 당시 입주민들의 지연 손해금 명목으로 경남기업(주)에 지급해야할 상당 금액의 유보금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경남기업(주)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상기 공사 중 6, 8단지 아파트 공사는 한신공영(주)와 추가로 계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공사의 미수금과 추가 공사금액을 지급 받고자 귀 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신 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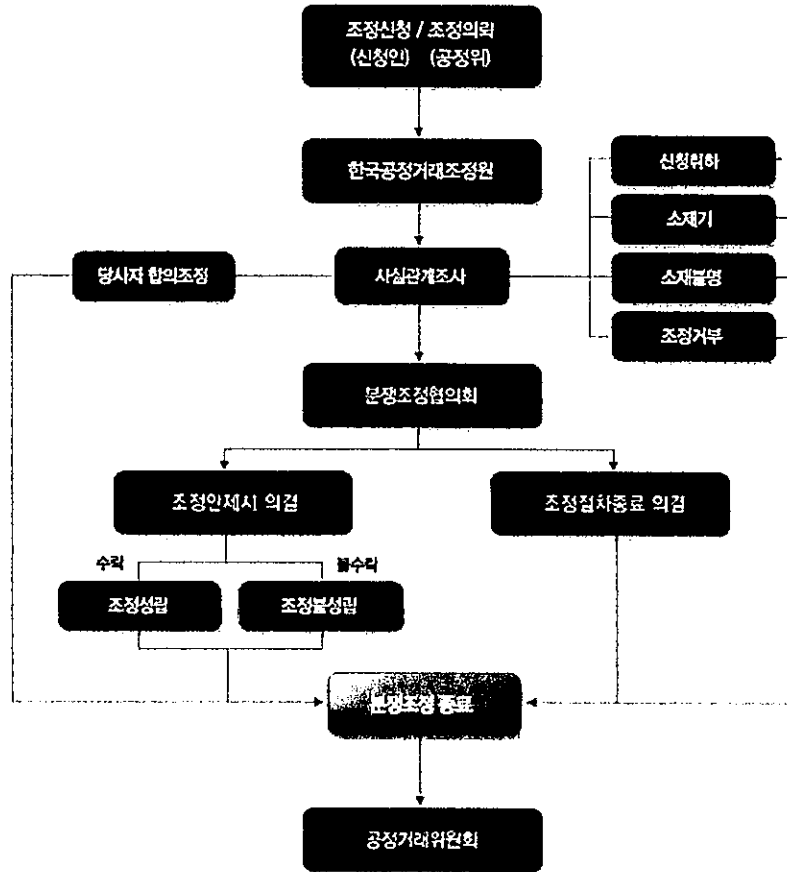
1. 하도급 계약서(변경, 2차 포함) 및 내역서 사본 1부.
2. 하도급 대금 지불(직접지급) 합의서 사본 1부.
3. 세곡2 초등학교 신축공사 내역서(최종 기성) 1부.
4. 하도급 대금수령(지급) 내역서(발행 전자세금서) 사본 1부
5. 세곡2 초등학교 추가공사 내역서(견적서) 1부. - 끝 -

신청인 정보건업(주)



분쟁조정 신청사건 처리안내

1. 귀사의 분쟁조정 사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처리됩니다.



2. 이 분쟁 사건은 통상 60일 기간 내에 처리되나,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한 경우 60일을 경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귀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절차 진행 전 또는 후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중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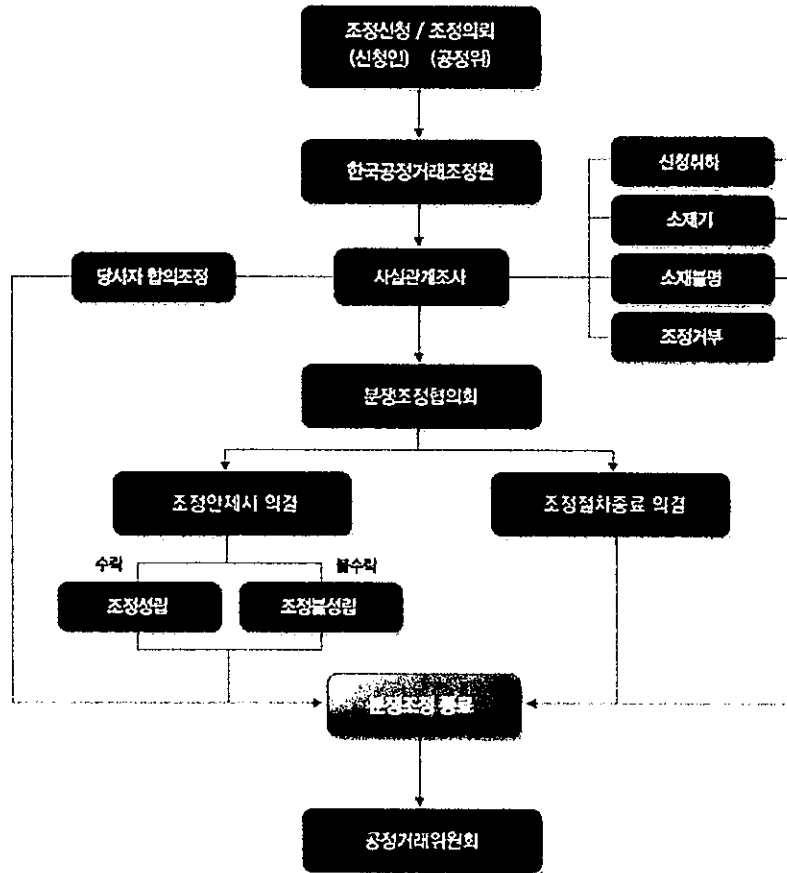
가. 담당 조사관이 기한을 정하여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 데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조정원의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 다만, 조정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조정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게 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여 법 위반 여부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사건 처리안내

1. 귀사의 분쟁조정 사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처리됩니다.



2. 이 분쟁 사건은 통상 60일 기간 내에 처리되나,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한 경우 60일을 경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귀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절차 진행 전 또는 후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중단됩니다.

가. 담당 조사관이 기한을 정하여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조정원의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 다만, 조정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조정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게 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여 법 위반 여부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일 반 현 황 표

① 사 업 체 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④ 업 종			⑤ 설 립 년 월 일		
⑥ 기 업 형 태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⑦ 주 요 사 업 내 용		
⑧ 재무현황 및 규모 (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자 산 총 액				○ 매 출 총 액	
○ 상 시 종 업 원 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12월말 월급여 간이세율(A01) 총인원)			
⑨ 건설위탁시 공종별 시공능력평가액 (계약체결 당해 사업연도 기준)		보유업종		시공능력평가액	
		합 계			
⑩ 본건 관련 확인 사항					
○ 계 약 체 결 일				○ 거 래 종 료 일	
○ 대 금 수 령 (지 급) 내 역		별지 첨부			
⑪ 기타 확인사항 (본 건 관련하여)					
○ 민사소송·조정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법원 명:)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타 협의회 조정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협의회 명:)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중재법에 의한 중재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중재기관 명:)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기타 분쟁조정기구 조정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조정기구 명:)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공정위 조사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명:)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⑫ 담당자 인적 사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E-mail
	(인)				

※ 증빙자료

1. 위 ⑥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자임
2. 위 ⑧의 재무현황을 증명하는 각 해당년도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증명원/부가가치세 과세제표준 증명원 1부
3. 위 ⑧의 상시종업원수를 증명하는 본 건 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 12월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위 ⑨를 증명하는 건설업 면허수첩 사본 중 시공능력 기재부분(보유면허 전부) 1부

계약변경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기간	비고
최초 1차변경 2차변경 정산				

*비고에는 “이 사건 공사 완료일은 0000. 00. 00” 또는 “0000. 00. 00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인한 타절” 등의 내용을 기재할 것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청구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지급일	지급금액	비고
선급금 1차 대금 2차 대금 정산금				

<별지>

하도급대금수령(지급)내역서

(단위 : 천원)

목적물인도(수) (기성청구서상)		하도급대금수령(지급)							비고
일자	금액	현 금		어 음			총액	미지급	
		일자	금액	지급일	만기일	금액			
계									

도급대금 청구 및 수령 내역서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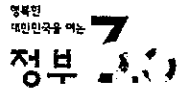
목적물인도 (기성청구서상)		도급대금수령							비고
일자	금액	현 금		어 음			총액	미지급	
		일자	금액	지급일	만기일	금액			
계									

※ 작성시 참고사항

1. 도급대금 청구 및 수령 내역서는 원사업자만 작성
2. 증빙자료(예 : 세금계산서) 첨부



서울특별시 SH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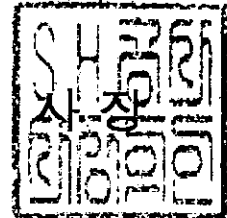
수신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건설하도급팀장)
(경유)

제목 자료 제출

1. 건설하도급팀-1033('16.04.0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협의회에서 제출요청한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의 하도급분쟁관련 자료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1. 답변서(별첨)
 2. 일반 현황표(별첨)
 3. 사업자 등록증(비공개)(별첨)
 4.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비공개)(별첨)
 5. 재무재표 증명원(비공개)(별첨)
 6. 원수급업체 공사계약체결 통보서(별첨)
 7. 원수급업체 세곡2 초등학교 도급내역서(별첨)
 8. 원수급업체 세곡2 초등학교 변경계약내역서(최종)(별첨)
 9. 하수급업체 세곡2 초등학교 계약서(별첨)
 10. 하수급업체 변경계약서(별첨)
 11. 키스콘 건설공사대장(별첨)
 12. 서울특별시 세곡2초등학교 대금수령현황(하도급)(별첨)
 13. 세곡2 초등학교 준공금 지급 공문철(비공개)(별첨)
 14. 신청인 하도급 직불요청 공문(별첨)
 15. 신청인 정산합의서(별첨) 103941461211891
 16. 원수급업체 기성 지출전표(비공개)(별첨). 끝.

서울특별시 0394146120391 SH공사



파트장

배양수

건축공사부장

04/21
한일현

협조자

시행 건축공사부-1948

(2016.04.21.)

접수

()

방참번호

우 135-98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www. i-sh.co.kr](http://www.i-sh.co.kr)

전화 02)3410-7431

전송 02)3410-7865

/ ysbae@i-sh.co.kr

/ 비공개(7)

1. 답 변 서

103941461136666

답 변 서

■ 분쟁의 배경

- 우리공사에서 공사발주한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는 2013.07.10 지방계약법에 의거 최저가격 낙찰제 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하여, 2013.09.17. 원수급업체(경남기업)과 단독으로 공사계약 체결하고, 초등학교를 2013.9.25.일 착공(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6단지 2013.12.5,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 8단지 2013.9.25)하였습니다. 해당 하수급업체(성보건설(주))는 원수급업체(경남기업)과 하도급계약을 2014.04.11.체결하여 우리공사에 통지함.

※ 신청인 하도급 계약체결현황

- 공 사 명 :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
- 수 급 인 : 경남기업(주)
- 하수급인 : 성보건설(주)
- 도 급 액 : 2,028,834,088원
- 하도급액 : 1,699,400,000원(하도급율 : 83.76%)

- 이후, 세곡2 초등학교 공사 진행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안행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9절(검사의 대가지급)',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의거 대금e-바로시스템'을 통해, 기성금을 원수급업체와 신청인에게 하도급 직불을 하였음.

※ 대금e바로 시스템 목적

-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각 당사자들이 실시간 지급현황 확인으로 계약문화 정착과 건설현장의 사회적 약자 보호

- 2014.07.28 『세곡2 초등학교』 공사준공에 따른 준공기성금을 원수급업체 및 해당 하수급인(신청인 포함)에게 최종 준공금액을 직불완료 하였고, 2015. 01.29 간접비(각종 보험료 등) 정산완료하여 원수급업체에 지급완료함.
- 이후,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공사진행중 2015.3.27 원수급업체가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여서 공사중단 되었음.
- 이에 우리공사에서는 2015.4.1일부터 원수급업체에 수차례 공사재개 촉구요청 및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공사재개가 되지 않아, 2015.4.29.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세곡2 초등학교 제외)』 부분에 대한 채권채무확정검사를 실시하여, 공사이행보증사인 서울보증에 보증시공 요청 하였음.
- 2015.06.08. 보증수급업체(한신공영)가 공사승계로 동 아파트부분 공사재개하여, 2015.07.26. 동 아파트부분 공사완료하였음.
- 2015.09.18 신청인을 포함한 하수급업체 26개사에서 우리공사에 직접 원수급업체(경남기업) 체불 하도급대금 요청이 있어, 2015.09.25.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체불 하도급대금을 원수급업체를 배제하고 직접 신청인을 포함한 하수급업체에게 직불처리 완료하였음.
- 2015.12.23. 우리공사와 원수급업체와 체결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6조 하도급대금지급지연 등』을 초래한 원수급업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함.
- 현재 원수급업체에서의 불복으로 원수급업체와 법원소송 진행중, 음번 신청인이 『세곡2 초등학교』 하도급대금에 10%한²¹의제기하면서 미수금을 요청함.

■ 답변내용

- 먼저, 신청인(성보건설(주))에서 '14.10.24 『세곡2 초등학교』 변경계약하였다고 하였으나 『세곡2 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우리공사에 변경계약관련 통지된 사실이 없으며(보증시공시, 보증수급업체와는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관련 해서 계약변경한 사실은 있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순공사비(506,077,306원), 기 수금(480,773,440원), 추가공사비(21,179,000원)에 대해, 당시 원수급업체에서 우리공사에 통보된 『세곡2 초등학교』 관련내용 및 증빙서

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순공사비는 450,834,840원, 기성 수령 순공사비는 432,020,000원이며, 신청인 계약변경 및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통보된 사항이 없었음. 이에 따라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신청인과 원수급업체간만 별도 계약 및 기성지급되어 발생한 사항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신청인 주장대로 초등학교관련 미수금이 있다면, 2014.7월 『세곡2 초등학교』 준공하고, 이후 준공정산으로 하도급대금 직불 당시(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7항'에 의거 발주처인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했어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조치를 상기 공사 준공이 1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또한, 신청인이 수차례에 걸쳐 우리공사에 직불요청 하였다고 하지만, 2015.4월 이후 원수급업체 공사중단시부터 하수급업체에게 정산완료된 『세곡2 초등학교』를 제외한 아파트공사부분만 보증시공 추진 및 하도급체불 검토할 수 밖에 없음을 우리공사에 문의시 그 사실을 일관되게 알렸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업체로부터 이의청구나 소 제기 등은 없었음.
- 다만, 동 아파트 공사완료후 신청인이 2015.9.18. 원수급업체(경남기업)관련 정산 하도급 직불요청(세곡2 초등학교 체불언급은 없었음)을 우리공사에 직접 문서로 1회 요구는 하였으며,
- 이에 우리공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2항4호'에 의거 원수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5.9월말 우리공사, 보증수급업체 및 신청인 3자가 정산합의하여 원수급업체 체불금액을 신청인에게 직접 직불조치 완료 하였음. 위와 같은 조치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3항'에 의거 원수급업체관련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소멸된 경우인 걸로 판단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우리공사는 『세곡2 초등학교』는 준공시 적정 하도급대금을 지불 하였다고 봐야하며, 이후 보증시공으로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준공시에도 하수급업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원수급업체 관련 하도급 체불대금을 하수급업체에게 적정 직불처리 완료함으로써 그 책임은 다하였다고 봐야함. 신청인 의견대로 『세곡2 초등학교』에 대한 미수금

이 실제 있을 경우에는, 추가공사 시행여부 등의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계약 당사자인 원수급업체와 신청인)간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됨. 끝.

문서번호	건축공사부-1569
보존기간	10년
결재일자	2016.03.31
공개여부	비공개(5,7)
일상감사	대상아님

★ ◎

부 원	파트장	건축공사부장	건설사업처장	
박지영	배양수	한일현	전결 03/31 김영수	
협 조	기계공사부장	김혁재	토목조경공사부장	이상태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세곡2초(울현초등학교) 하자보수 처리계획 보고

103941472709456

서울특별시 SH공사
(건설안전사업본부)

세곡2초(울현초등학교) 하자보수 처리계획 보고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6,8단지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 중 세곡2초등학교(울현초)의 준공 후 하자보수에 대한 처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 합니다.

1. 검토배경

- 가. 해당 건설공사의 원도급사인 경남기업(주)가 법정관리를 이유로 준공 후 하자보수 불이행
- 나. 2014년 학교시설물 준공 후 교육지원청에 인수인계 완료하였으나,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대상자가 SH공사라는 사유로 보증서 만료일(~2019.12.23.)까지 시설물 유지보수를 우리공사가 처리토록 요청
- 다. 경남기업(주)에 하자보수 이행토록 촉구(4회)하였으나 건설공제조합과의 3자면담 및 현장조사 결과 하자보수보증서 사용기로 협의·결정

2. 관련근거

- 가. 서울울현초등학교-4626(2015.04.23.) 「2015년 학교시설물 하자보수 요청」
- 나. 건축공사2팀-2873(2015.06.18.) 「하자보수관련 보증채무의 이행 요청」
- 다. 강북보상센터-2598(2015.06.23.) 「하자보수관련 보증채무의 이행 요청에 대한 회신」
- 라. 강북보상센터-3215(2015.07.30.) 「현장조사 결과 알림」
103941472709456
- 마. 학교시설지원과-429(2016.02.15.) 「세곡2초등학교(서울울현초등학교) 하자보수 재요청」
- 바. 강북보상센터-630(2016.02.23.) 「하자현장조사 결과통지(경남기업,세곡2초등학교)」

3. 보수 요구사항

- 가. 건축 : 도배, 크랙, 누수 등 15건
 - 나. 토목 : 되메우기 침하 등 2건
 - 다. 조경 : 유치원 놀이터 바닥패드 보수 등 2건
 - 라. 기계(소방 포함) : 소방 알람벨브 불량 등 3건
- ※ 상세 보수요구 내역 : 붙임 참조

4. 계약시행(안)

- 가. 계약방식 :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 다. 수의계약 사유 : 학교시설물 유지보수 실적보유 회사 중 최저가 견적제출 업체
- 라. 계약상대자 : 성산종합건설주식회사
- 마. 추정공사비 : 19,990,000원
- 바. 예산계정 : 하자보증금

6. 추진일정

- 가. 2016. 03. : 건설공제조합에 하자실보수비 지급 요청
- 나. 2016. 04. : 계약팀 수의계약 의뢰 계약체결
- 다. 2016. 04 ~ 2016. 07 : 하자보수 공사 시행(90일)

7. 행정사항

- 가. 건설공제조합에 기협의를 된 하자실보수비(금26,480,000원) 지급요청
- 나. 상기 업체와 계약체결 후 하자보수 공사 시행
- 다. 조경관련 하자보수는 2015년 교사식재 하자보수 시 기처리되어 금번 하자보수 공사 항목에서 제외하되, 향후 동일하자 발생 시 관련예산 내 사용토록 처리.
- 라. 건설공제조합 수령액과 보수공사 계약금액 차액(6,490,000원)은 보증기간 종료 또는 조합 미인정 하자에 대한 예비보수비로 사용하되, 하자보수 보증 만료일 (2019.12.23.)까지 미사용 잔액은 접이익 처리.

- 붙임 1. 하자현장조사 결과통지[경남기업, 세곡2초등학교]
2. 강북보상센터630_첨1_하자인정내역서
3. 하자보수공사 내역서(성산)
4. 비교견적
5. 최근3년간 관공서 실적증명서
6. 2015년 학교시설물 하자보수 요청
7. 세곡2초등학교(서울을현초등학교) 하자보수 재요청
8. 학교시설지원과-429(20160215). 끝.



※원본확인용QR코드

공사변경계약서

<계약자>

<발주처>

에스에이치공사
 시설공사 계약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담당: 정영훈 (Tel: 02-3410-7196)

<계약상대자>

상 호 : 성산종합건설(주)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28 (합정동, 정은빌딩)
 대 표 자 : 이화영
 사업자등록번호 : 134-81-58541
 전 화 번 호 : 02-3142-1344
 팩 스 번 호 : 02-332-3840

계 약 번 호	20160645646 - 01	관 리 번 호	
공 사 명	세곡2 초등학교 시설물 하자보수 공사		
대 표 계 약 자	성산종합건설(주)	수 요 기 관 명	에스에이치공사
계 약 일 자	2016년 06월 27일	변 경 계 약 일 자	2016년 08월 23일
계약보증서 전자제출여부	자급각서대체		
하자보수보증금율	2%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변 경 구 분	계약내용변경		
변 경 사 유	계약일로부터 90일(공사기간)로 계약체결토록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착공일로부터 90일 반영하여 계약기간 연장		
지 체 상 금 율	0.10 %		

[기간변경 정보]

변경 전 착공 일자	2016년 07월 04일	변경 후 착공 일자	2016년 07월 04일	
변경 전 금차준공기한	2016년 09월 04일	103941472709411	변경 후 금차준공기한	2016년 10월 02일
변경 전 총공사기한	2016년 09월 04일	변경 후 총공사기한	2016년 10월 02일	
준공기한 변경 사유	착공일로부터 90일 반영하여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변경 정보]

	총부기계약금액	금차계약금액
변경전계약금액	18,390,000 원	18,390,000 원
1) 설계변경금액	0 원	0 원
2) 물가변경금액	0 원	0 원
변경후계약금액	18,390,000 원	18,390,000 원

[채권 및 인지세 정보]

국민주택채권 추가매입액	0 원	지방채추가매입액	0 원
추가계약보증금	0 원		
인지세과세대상여부	N	추가인지세액	0 원

103941472709411

공정한 분쟁조정, 자율적인 경쟁질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 조회

사건번호: 하도2016-0280

신청인: 성보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박기호)

피신청인: 에스에이치공사(대표이사 변창흠)

1. 위 분쟁사건에 대하여 우리 협의회(제2016-9차, 2016. 8. 16. 개최)에서 심의한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붙임 조정결정서의 조정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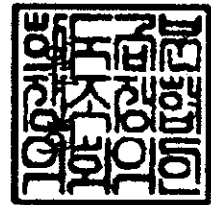
2. 귀사는 동 조정안에 대하여 2016. 9. 8.(목)까지 "수락" 또는 "불수락"을 명백히 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한까지 수락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협의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이 분쟁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게 됩니다.

3. 참고로, 분쟁당사자의 조정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 송부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여 범위반 여부와 위반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참고로, 귀사에서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당사자 상대방의 기업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조정결정서 1부. 끝.

한국공정거래조정
하도급분쟁조정협의



수신자 성보건업 주식회사(대표이사 박기로), 에스에이치공사(대표이사 변창흠)

조사관 류성호

팀장 김건호

실장 최인수

부원장 박원기

원장 배진철

08/26

협조자

시행 건설하도급팀-2648 (2016.08.26.) 접수 ()

우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회관 9층 /

전화 02-2056-0045 전송 02-2056-0049 / eagleye@kofair.or.kr / 공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정서

사건번호 하도2016-0280
사건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신청인 정보전업 주식회사(대표이사 박기로)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30
피신청인 에스에이치공사(대표이사 변창흠)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결정일자 2016. 8. 16.

주 문

피신청인은 2016. 9. 27.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초
등학교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5,303,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분쟁사실

발주자인 피신청인은 2013. 9. 17. 원사업자에게 ‘세곡2보금자리 주
택지구 아파트(6, 8단지)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 (이하 ‘이 사건 도급
공사’ 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9. 25. ~ 2015. 2. 28., 계약금액
69,687,902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천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위탁
하였다.

신청인은 2014. 3. 25. 원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도급공사 중 창호 및 잡철물 공사’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 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3. 25. ~ 2015. 5. 10., 계약금액 1,761,750천 원에 위탁받았다.

이 사건 도급공사 및 하도급공사는 크게 ‘초등학교’ 부분과 ‘아파트’ 부분으로 구분되며, 원사업자와 신청인은 이 순서대로 공사를 각 시공하였다.

또한 피신청인 및 원사업자와 신청인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은 모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한편 피신청인과 원사업자는 2014년 10월경 이 사건 도급공사의 초등학교 부분을 준공하고, 2014년 11월경 당초 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 46,753천 원을 증액하고 간접비 등을 실비 정산하여 최종적으로 118,889천 원이 감액된 8,802,069천 원으로 이에 대한 정산합의를 완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원사업자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초등학교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사업자는 도급 기성 청구시 신청인의 초등학교 부분 하도급대금 중 직접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25,303천 원(이하 ‘이 사건 유보금’ 이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기성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유보금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대금을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이후 원사업자가 이 사건 도급공사의 아파트 부분을 시공하던 중인 2015.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사건번호: 2015

회합100070)하여 2015. 3. 30.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는 등 도급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자, 피신청인은 2015. 4. 29. 이 사건 도급공사의 이행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최종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소재)에 원사업자가 미시공한 도급공사의 잔여분에 대한 보증시공을 요청하였고, 한신공영 주식회사(대표이사 태기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소재, 이하 ‘한신공영(주)’ 라 한다)가 대체시공업체로 선정되어 2015. 7. 26. 이 사건 도급공사의 잔여분을 완공하였다.

신청인 또한 2015. 6. 10. 한신공영(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잔여분을 공사기간 2015. 6. 10. ~ 2015. 7. 27., 계약금액 1,416,524천 원에 위탁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2015. 12. 28. 한신공영(주)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아파트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부분 하도급대금 전액을 직접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일 현재까지 초등학교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신청인은 하도급대금 46,482천 원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유보금에 대한 직접 지급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유보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우선 발주자인 피신청인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인 신청인이 직접 지급 합의를 한 사실과, 신청인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초등학교 부분을 완공한 후 원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신청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 청구를 한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유보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사유를 원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초등학교 부분을 완공하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및 이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유보금을 제외한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만 신청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는 피신청인이 원사업자의 신청인에 대한 항변사유를 원용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유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단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초등학교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유보금이 발생하였고, 현재 신청인이 이를 제출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원칙적으로 하자보수보증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원사업자가 피신청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원사업자가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조정 절차 진행에 비협조적이고 이러한 절차의 준수가 신청인에겐 가혹한 반면 피신청인에게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유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직접 지급

신청인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초등학교 부분의 추가공사대금도 피신청인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우선, 추가공사는 이 사건 직접 지급 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으로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인의 추가공사 부분을 포함하여 원사업자와 피신청인이 준공정산을 하여 공사의 내용과 대금이 특정되었고, 이후 원사업자가 회생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주자가 직접 지급 의무 발생 전에 이미 원사업자에게 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면 이를 공제한 대금의 범위에서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추가공사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 이전에 이미 원사업자와 준공정산하여 이에 대한 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추가공사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할 하도급대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 간접비 등의 감액 정산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원사업자 사이에 간접비 등에 대한 감액 정산이 이루어져 원사업자와 신청인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정산이 이루

어지면 신청인의 하도급대금 또한 감액될 것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러한 간접비 등에 대한 공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사업자는 신청인과의 사이에서 감액 정산해야 할 간접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초등학교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5,303천 원을 지급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5849

정본입니다.

2016. 8. 16.

한국공정거래조정
하도급분쟁조정협의

